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I)

—慶南管内 地區別 漁協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Operations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崔 正 鈞

Jeung-yun Choi

目 次

- | | |
|-------------------|-------------------|
| 序 言 | Ⅱ. 漁協의 組織과 運營 |
| I. 慶南管内 漁協現況 | Ⅳ. 漁協의 經營規模와 財政狀態 |
| Ⅱ. 慶南地方別 漁協의 發生過程 | |

序 言

本 論文의 作成目的은 2 가지 뜻이 있다. 그 하나는 本人이 過去 水協在職 經驗을 통해 서 얻은 協同組合 運營에 關한 知識을 体系的으로 整理코져 함에 있고 다른 하나는 單位 漁協의 運營實態를 把握 分析함으로써 漁協 問題에 對한 資料를 紹介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것을 二回에 걸쳐 發表코져 한다.

水協發足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10餘年이 經過하는 동안 우리나라 水産業協同組合은 政府의 積極的인 資金支授과 制度的措置 그리고 組合員自身들의 努力으로 質量兩面에서 거둔 業績과 成長은 實로 컸었다. 그로 因하여 水協系統의 對外的 公信力도 많이 向上되었고 漁民所得의 増大와 우리나라 水産業의 世界上位圈 도전에 기여한 공로 또한 높히 評價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水協運動의 底邊構造가 되고 있는 單位漁業協同組合은 經營 組織체로서의 運營과 事業活動面에서 아직도 많은 問題點이 그대로 남아 있을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沿岸漁業의 中樞機能을 擔當하는 機關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닌 地區別漁業協同組合은 그에게 賦與된 任務와 社會的 經濟的意義에 비추어 固有 機能의 發揮와 事業活動이 如前히 未弱한 狀態에 놓여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地區別漁協에 對한 不實 亂立 組合의 整備統合, 組合 信用業務의 開設, 自体資金造成運動 등 自立基盤構築을 위한 基本的 前提條件이 政府와 水協에 依해 進行되고 있으나 아직도 組織과 運營, 經營 및 事業構造, 財政收支狀態 등에서 改善을 要하는 許多한 制度的, 構造的 諸特質과 沮害要因이 單位地區別漁協에서 完全 拂拭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本論은 地區別漁協의 이와 같은 運營實態와 問題點을 알아 보기 위하여 慶南管内 15個地區別 漁協을 中心으로 그 現況과 發生過程, 經營規模, 事業運營實態등에 關한 全般 的인 運營의 實態를 分析 하였으며, 그 結果 몇가지 主要問題點을 結論으로 提起하였다.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I)

여기에 提起된 問題點 및 그에 對한 對策이나 改善方向에 對해서는 이미 研究가 되었고 政府와 水協中央會에서도 指摘하여 適切한 方策을 講究中에 있으므로 다만 그것이 如何히 개선 될 것인지가 注目 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은 單位漁協의 發展過程과 그리고 그것이 現在 如何히 運營되고 있는가 하는 運營實態의 再確認과 資料의 整理에 意義가 있을뿐, 우리나라 漁協問題에 關한 全新 새로운 研究라고는 보지않음을 前提한다.

그리고 組合當平均規模對比를 爲한 組合數는 整備統合된 組合數를 基準으로 各年度別로 固定시켰으며, 釜山市漁協의 資料提供 協助가 많았음을 附記한다.

一. 慶南管內의 漁協現況

1. 現況

지난 1972年末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에는 全國적으로 125個의 單位水產業協同組合이 設立되어 있었고 組合員 數는 141,920名에 이르렀던 것이나 漁協不實運營의 主된 要因이 亂立된 漁協組織에 있었다 하여 水産廳과 水協中央會는 水協法 第155條의 組合解散權規定에 依하여¹⁾ 漁協整備作業을 斷行한 結果 全國적으로 38個의 單位組合을 整理하고 87個 組合으로 存置케 함으로써 現在 우리나라에는 地區別漁協 70個 業種別組合 및 水産物製造業組合 17個組合이 組織 運營되고 있다. 이 가운데 慶南地方에는 現在 15個 地區別組合과 7個의 業種別組合 都合 22個 單位組合이 設立되어 있고 여기에 加入되어 있는 組合員數는 22,121名이다. (1972年現在 地區別組合員)

한편 整備以前의 慶南地方 組合數는 地區別 22個組合, 業種別 9個組合으로서 總 31個의 單位組合과 24,912名의 組合員이 있었으나 整備로 말미암아 7個地區別組合, 2個의 業種別組合을 합친 9個의 單位組合이 줄어들었으며 組合員의 數도 2,791名이 減少된 셈이다.

<表 1> 整備前後의 慶南管內 地區別漁協

整備以前組合	整備以後組合	整備內容	備 考
三千浦 漁 協	三千浦市 漁 協	市, 또는 郡으로 改稱	
釜 山 〃	釜 山 市 〃	〃	
忠 武 〃	忠 武 市 〃	〃	
馬 山 〃	馬 山 市 〃	〃	

1) 水産廳長은 組合(中央會除外)이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할 때 中央會長의 意見을 들어 이를 解散시킬수 있다. (水協法 第155條 參照)

- ① 組合이 長期間 그 業務를 實施하지 않을 때
- ② 組合運營이 事業量으로 보아 困難하다고 認定될 때
- ③ 法의 規定을 衛背하거나 公益을 해쳤을 때

水産經營論集

南海	〃	南海郡	〃	〃	
固城	〃	固城郡	〃	〃	
熊東	〃	昌原郡	〃	〃	
鎮海	〃	鎮海市	〃	〃	
河東	〃	河東郡	〃	〃	
金海	〃	金海郡	〃	〃	
機張	〃	梁山郡	〃	2個組合統合 名稱變更	1972. 9. 30 整備
西生	〃				
溫山	〃	蔚州郡	〃	2個組合統合 名稱變更	〃
亭子	〃				
蔚山	〃	蔚山市	〃	〃	〃
方魚津	〃				
閑山	〃	統營郡	〃	〃	〃
欲知	〃				
巨濟	〃	巨濟郡	〃	4個組合統合 名稱變更	
長承浦	〃				
冠浦	〃				
城浦	〃				
22 個 組 合		15 個 組 合			

資料：水協慶南支部

漁協整備措置에 對한 主目的은 組合의 數를 줄임으로써 業務區域을 擴大시켜 事業量과 經營規模를 높이는 것과 不實運營에 直面한 組合을 統合함으로써 漁協의 公信力을 回

〈表 2〉 道 別 漁 協 및 組 合 員 數

	1963		1971		1972	
	組合數	組合員數	組合數	組合員數	組合數	組合員數
京 畿 道	9	4,565	10	8,783	6	7,261
忠 南 〃	6	2,437	6	6,200	6	6,192
全 北 〃	4	1,056	5	2,255	4	2,112
全 南 〃	28	42,290	28	55,845	18	47,709
慶 南 〃	19	19,009	22	24,912	15	22,121
慶 北 〃	91	1,041	10	14,954	81	4,854

漁業協同組合의 經營實態에 關한 研究(1)

江 原 〃	8	6,624	10	8,150	8	2,487
濟 州 〃	5	13,414	5	18,750	5	13,832
地 區 別 計	88	100,366	106	139,849	701	21,568
業種別 및 製造業計	15	1,151	20	2,682	17	2,100
總 計	103	101,517	126	142,531	87	123,668

資料: 水協中央會 業務便覽

復하자는 두가지 뜻이 있었다고 본다.

몇가지 重要項目으로 對比해본 整備前後의 漁協現況은 다음과 같다.

即 組合員數와 漁村契를 包含한 組織基盤과 經營事業規模 그리고 收支規模에 이르기까지 倍以上, 어떤 경우에는 3倍以上의 規模差를 보임으로써 漁協이 事業체로서 存立할 수 있는 經營基盤을 擴充하였다.

<表 3> 慶南地方 整備對象漁協의 整備前後 規模比較 (1972)

	組合員數	漁 村 契	漁 船 數	總事業規模	委 販 高	收益規模	費用規模
	명		隻	천원	천원	천원	천원
整備前 漁協 平均	885	16	398	91,779	70,000	12,623	12,580
整備後 〃	2,124	38	815	220,271	156,800	30,707	30,299
慶南 漁協 〃				370,938	291,100	70,161	69,337

資料: ①水協中央會, 1972年組合現況에서 作成

② 總事業規模는 1969年 計數임.

<表 4> 資產 및 施設規模의 整備前後對比 (1972)

	總 資 產	負 債	自己資本	建 物		介 庫		委 販 場		給油施設	
				棟	坪	棟	坪	個所	坪	個所	能力(%)
整備前 漁協 平均(A)	73,865	63,138	10,726	1.9	61	1.6	56	0.4	14.2	0.8	235.6
整備後 〃 (B)	175,255	120,553	25,743	4.6	146.4	4	134.4	1.2	34.4	2	569.6
B-A	(101,390)	(67,415)	(15,017)								
慶南全體平均	291,671	246,430	45,241								

資料: 水協中央會, 1972년 組合現況에서 作成

그러나 이는多數組合의 物量을 小數 組合으로 算術平均한 單純한 計數 差異 外는 現段階로서 整備效果를 據論할 수 없다. 組合의 區域이 넓어지고 組合員 數가 늘어나거나 經營規模가 擴大되었다고 하여 組合自立과 黑字運營에 根本目標을 두었던 期待가 쉽사리 이루

워 질것이라는 保障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規模의 擴大가 漁協經濟의 構造的矛盾까지 동시에 解決할 수 없기 때문이며, 漁民의 協力 体制 또한 問題視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單位組合의 運營問題는 앞으로 分析上에서 나타나게 되겠지만 組合規模에 못지않게 運營方法, 組合員의 協力程度, 事業 및 收支의 構造等 如何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므로 業務區域과 經營規模의 擴大만이 漁協運營의 要諦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每年 實施하고 있는 水協中央會의 單位組合에 對한 運營實態調查에서 赤字漁協과 不實漁協의 大部分이 小規模弱少組合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金仁台」教授도 「韓國 水協의 育成方向」에서 赤字組合과 年間經營成果가 僅少한 組合에 對해서는 事業實績과 關聯된 組合의 經營統計를 動態的으로 勘案하여 該等 組合이 單位組合으로서 存立基盤이 不確實할 경우 合併을 考慮할 必要가 있음을 主張하고 있다.

漁協經營이 事業活動의 範圍과 種類 및 對象에 制限되고 있는限 組合의 業務區域과 組織基盤은 組合存立의 經濟的背景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組合의 固定的支出經費는 最少限의 事業規模를 必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分散된 事業班을 大單位로 統合하는 것은 規模의 矮少性을 克服함이 可能한 것이다.

2. 成長指標

以上과 같은 整備過程을 거치면서도 慶南의 地區別漁協은 그 數에 있어서 全國의 26%이며, 組合員數는 18.4%에 達하고, 委販高는 33.8%를 占하고 있을 뿐 아니라 全國沿岸 水產生產高의 43%(1972年現在)가 慶南管下 組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그 役割과 機能의 活發性을 짐작케 한다.

이는 全國漁協의 貸出金中 37.7%가 慶南管內組合員에게 貸出되고 있다는 것과 全國漁協 運營豫算의 30%를 역시 慶南의 漁協들이 찾아하고 있다는 事實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면 現在의 慶南地區別漁協은 發足以後 얼마나 成長發展되어 왔는가를 計數로 表示할 수 있는 몇個의 指標에 依據 보기로 하자.

即 다음<5>表에 依하면 1963年부터 1972년까지 10년이 經過하는 동안 組合當平均 經營規模는 10倍, 自己資本規模 13.2倍, 事業規模 6.5倍, 漁民貸出金은 19.4倍, 豫算規模 7.6倍가 各各 成長하였고, 그리고 1人當貸出金은 16.7倍나 增加됨으로써 組合員 1人當 事業利用 高도 若 5倍가까이 늘어났다.

組合의 自己資本과 貸出金에 있어서는 全國漁協의 平均成長率을 下廻하였으나 經營規模와 事業規模 및 組合員利用高面에서는 全國漁協의 成長速度를 上廻하였으며, 組合의 豫算規模와 組合員數의 增加傾向은 全國과 거의 비슷하다.

漁業協同組合의 經營實態에 關한 研究(1)

<表 5>

漁協 經營의 成長指標

(單位: 1000원)

區 分 項 目	1 9 6 3		1 9 7 2		成長率 72/63	
	全國平均	慶南平均	全國平均	慶南平均	全國平均	慶南平均
總 資 產 規 模	98,185	28,164	281,971	281,641	2.8倍	10.0倍
自己資本 %	1,812	3,420	31,533	45,241	17.4%	13.2%
重要事業①%	66,048	56,581	340,130	370,853	4.1%	6.5%
總貸出金 %	5,214	7,041	126,778	136,307	24.3%	19.4%
總 豫 算 %	5,957	9,043	47,168	69,338	7.9%	7.6%
指導事業 %	2,159	3,310	2,925	5,207	1.3%	1.6%
豫 受 金 %	1,104	미 상	26,722		24.2%	
組合員 1人當利用高						
事業利用高	45	49	178	234	3.9%	4.7%
人當貸出金	3.6	5.5	73	92	20.1%	16.7%
人當指導費	1.4	2.5	1.7	3.5	1.2%	1.4%
人當豫算額	4.1	7.0	27.1	47.0	6.6%	6.7%
組 合 員 數	1,448	1,261	1,736	1,474	1.2%	1.2%

註 1) 主要事業의 1972年 數値는 1969年 計數이며, 事業의 種類는 借用, 購買, 販賣利用加工 4個事業임.

資產規模를 비롯하여 自己資本, 事業, 貸出金, 豫算 등의 規模가 1963年에 比하여 이렇게 顯著히 擴大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單位漁協이 發展했다는 것을 뜻한다. 實로 格段의 成長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漁民과 組合員의 立場에서 보면 漁協事業의 어느 것 하나라도 重要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健全한 漁協의 發展의 方向에서도 事業의 均衡은 어느 정도 維持되는 것이 所望스러움에도 不拘하고 指導事業의 경우 오히려 實質의 後退를 한 셈이고, 各事業이 同時의 成長을 이룩하지 못하여 漁協의 經濟構造가 如前히 취약적 現象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漁協의 自律的意志와 自體經營活動으로 이와 같은 成長을 主導해 온 것이 아니라 政府나 水協의 哺育에 依해 規模를 늘려온 데 지나지 않으므로 漁協經營의 他律性, 外部依存性을 脫皮할 수 있는 質的改善이 성장과 同時에 수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려 20倍의 貸出金規模의 增加와 資產 가운데 信用事業資產이 大部分이며, 事業은 販賣(委託販賣)爲主라는 財政 및 事業費構造가 이 사실을 뒷받침 한다.

二. 慶南地方漁協의 發生過程

1. 慶南의 地區別 漁協發生 過程

18世紀의 西歐産業革命과 더불어 封建社會가 崩壞됨으로써 商品生産을 基礎로한 資本主義

經濟가 成立되자 農民層은 資本의 本源的 蓄積過程에 있어서 小生産者와 賃金勞動者로 分解 轉落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로인한 資本主義經濟의 成立과 都市經濟의 發達은 많은 農民層의 分解와 賃金勞動者의 犠牲을 強要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權益保護를 爲한 農民運動과 消費者保護運動이 Robert Owen(1654~1725)등을 中心으로 하여 싹트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近代的 最初의 協同組合이라 할 수 있는 1844년의 英國 Rochdale消費者組合도 事實은 그 以前의 Owen을 中心으로 하는 J.Bellers, G.Winstanley等 農民救貧運動을 爲한 協同組合主義者들에 의한 思想的源流에서 더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思想이 1769년에 英國의 William King(1766~1865)으로 하여금 「페윅크」 食料品購賣組合을 組織케 했고 이어 1844년에 비로소 「Rochdale」에서 그들의 開拓者組合(Rochdale Society Equitable Pioneers)을 誕生시키게 한 直接的인 動因이 되었던 것이다. 當時의 이와같은 社會經濟的 背景이 그러한 協同組合運動을 일으키게한 契機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思想的潮流가 「프랑스」로 옮겨짐으로써 그 當時 農業生産을 主軸으로 하고 있었던 「프랑스」에서 生産組合을 發展시킨 契機가 되었고, 産業革命의 後進으로 商品生産基礎가 늦은 獨逸에서는 「라이파이젠」(1818~1888)등으로 하여금 1862년에 信用組合을 낳게했다.

日本에서는 1800年代後半기에 上記 西歐 協同組合思想이 流入되어 1900년에 그들의 産業組合法을 制定케 했고 이어 全國적으로 協同組合運動이 일어났으나 後에 이 産業組合은 二次大戰의 軍需品供給機關役割을 擔當했다. 이와같은 協同組合물결이 우리나라에 까지 밀려온 것은 日本을 거쳐 1905년의 韓日協定과 1910년의 韓日合併을 契機로한 李朝末期였다.

以上の 協同組合成立의 背景을 거친 우리나라의 近代的協同組合은 1907년의 地方 金融組合規則에 依하여 日本의 植民地收奪을 爲한 合法의 手段의 하나로 韓國到處에 各種産業團體組織을 서둘러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農漁村에 一種의 信用組合을 組織케한 것이 그 嚆矢라보고 있다.²⁾

여기에 對하여 漁協은 1908년의 韓國漁業令에 依해 設立된 巨濟閑山毛氈田組合을 그 鼻祖로 들고 있다.³⁾ 이와 같은 史實은 慶南各地區別漁協이 所藏하고 있는 沿革資料에서도 역시 巨濟毛氈田組合이 가장 最初의 設立漁協임을 밝히고 있는데 다만 閑山漁協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11년의 漁業令에 依해 設立된 것으로 나타났다.

2. 關係法令에 依한 漁協設立 區分

現在 15個地區別漁協의 그 前身組合에 對한 沿革을 살펴보면 1908년의 韓國漁業法에 依해 設立된 組合, 1911년의 漁業令과 그 規則에 依한 組合, 1929년의 朝鮮漁業令과 그 規則에 依한 組合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이 3가지 關係法令에 依한 組合設立과 時代的 區分은 다음과 같다.

2) 崔鍾斌著: 農業協同組合論新講, 青丘文化史, 1966. p~224

3) 張毅解著: 水協經營論, 1964. p-2. 釜山水産大學論文集(入門, 社會科學編): 第8輯. 1971. 12 p-5

가. 1907年의 韓國漁業法에 依한 組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의 法律體系를 갖춘 漁業關係成文法이라 할 수 있는 이 韓國漁業法은 1908年(隆熙二年) 11월에 法律第 29號로 制定되어 1909年 2月27日부터 施行되었으며 우리나라 漁業秩序가 처음으로 이成文法에 依해 規律되었다고 한다.⁴⁾

이 法에 依하여 設립된 漁業組合은 巨濟島와 閑山島를 中心으로 米역등 海洋類 채취業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組織한 巨濟毛菴田組合이며 우리나라 漁業團體 및 漁協組織의 始初이기도 하다. 그러나 學者들의 資料에 依하면 巨濟閑山加助漁基組合도 이때 組織되었으며 1942年에 發刊된 吉田敬市氏의 朝鮮水產開發史에서는 巨濟 加助 閑山의 3漁基 組合이 設立된 것으로 記述하고 있으나⁵⁾ 現在各漁協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前身組合에 關한 沿革資料에 依할 것 같으면 巨濟漁協 하나만이 이때 設立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巨濟組合의 最初 設立名稱도 「巨濟閑山」毛菴田組合이 아닌 「巨濟毛菴田 組合」으로 表示되고 있어 그 內容이 各各 一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巨濟郡漁協(現在)의 前身인 巨濟漁業組合이 最初로 巨濟毛菴田組合이라는 이름으로 發足한 年代는 다음과 같이 1908年 7月10日이므로 韓國漁業法이 시행되기 一年前에 이미 設立되었던 것으로 본다.

巨濟郡漁協의 沿革

- ① 1908年 7月10日 巨濟毛菴田組合으로 發足
 - ② 1912年 11月 30日 巨濟漁業組合으로 變更
 - ③ 1962年 4月 1日 巨濟漁業協同組合으로 設立
 - ④ 1972年 10月城浦漁協, 冠浦漁協, 長承浦漁協을 統合 巨濟郡漁協으로 設立
- 資料: 巨濟郡漁協沿革參考.

우리나라에 있어서 舊漁業組合의 發生史를 2個의 主流로 區分하여 그 하나를 韓國人에 依한 것과 다른 하나는 日本人에 依하여 形成된 組合으로 보고 있는데 日本人에 依해 組織된 組合을 지금의 業種別漁協의 前身인 水產組合을, 韓國人에 依하여 組織된 漁業組合을 지금의 地區別漁協前身인 地方 漁業組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巨濟毛菴田組合을 가리키는 것이다.⁶⁾

이렇게 볼때 이 巨濟毛菴田組合은 우리나라 사람에 依하여 組織 되고 또한 近代의 漁業組合의 嚆矢라는 점에 意義가 큰 것이나 韓國漁業法이 制定된 1900年初葉의 우리나라 社會에 對한 政治經濟的 時代的 背景을 유미할 필요가 있다. 1876年에 韓日間의 江華修護條約이 締結되고 李朝末 韓國에서 발생한 甲午戰爭에 日本이 勝利하게 되자 韓國漁業法制定을 前後하는 그 무렵 이미 우리는 日本資本主義의 侵略을 받고 있던 때이며, 그後 다시 露日戰爭(1904~1905)에서 까지 日本이 勝利함으로써 1905年에 乙巳保護條約을 締結하고 이어 1906年

4) 水協中央會刊: 韓國水產發達史 1966, p. 466

5) 吉田敬市著: 朝鮮水產開發史 朝水會刊 昭和29年, p. 425

6) 水產大學論文集: 前掲書 p. 5

에 그들은 統監府를 韓國에 設置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獨占的 支配權을 確立하기 始作한 事였다. 그러므로 1908年代는 事實上 韓國에서의 内外政 全般이 日本人에 依해 管掌 되었다해도 過言이 아닌 日本統監府治下의 時期이었던 것이며 한편 그 당시 日本은 韓國의 封建的 經濟體制를 米作生産經濟體制로 轉換시켜 農水 蠶業等 原始産業의 獨占을 이미 苛하고 있었던 것이다.⁷⁾ 이와같은 當時의 時代的 歷史的 背景으로 미루어 볼때 1908年の 韓國漁業法이 비록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法律이라 하더라도 그에 (韓國漁業法) 對한 우리 主體意識具現에는 相當한 制限이 加해 있을 것으로 推測된다.⁸⁾ 뿐만 아니라 日本人들 역시 當時의 韓國漁業法은 그들(日本)의 漁業法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 보고 있다⁹⁾

나. 1911年の 漁業令 및 漁業組合 規則에 依한 組合

이 令은 1910年9月 韓日兩國이 合邦되고 韓國이 日本의 完全支配下에 들어가자 日本은 政治, 社會, 經濟等 모든 分野에 設쳐 統治權을 強化하기 爲하여 過去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各種法律을 廢止시켜 그들의 支配權確立에 有利한 새로운 法律로 바꾸려고한 制度改革의 一環으로 制定된 漁業에 관한 規制法令 이었다.

따라서 從前 1908年の 韓國漁業法을 代身하여 1911年 6月 法律 第6號로 漁業令과 漁業組合規則을 새로이 制定하고 1912年初에 이를 施行케했다.

이 令에 依하여 비로소 地先漁業組合은 面單位業務區域을 原則으로 하는 地域組合이 되었고 또한 法人資格을 갖추게 되었으며¹⁰⁾ 慶南에는 이때 閑山漁業組合 (지금의 統營郡漁協 前身)을 筆頭로 1912年 西生 機張等 모두 18個 漁業組合이 차례로 設立되었다. 지금의 釜山市 漁協과 三千浦市 漁協 等도 이때 組織된 組合이다.

이 令으로 組織된 全國의 組合數는 1921年現在 88個 組合이었고 組合員數는 27,070名이었던

<表 6> 1911年の 漁業令 依하여 設立된 組合

組 合 名	設 立 年 度	組 合 名	設 立 年 度	備 考
閑山漁業組合	1912	釜山漁業組合	1922	
西生 〃	1913	河東 〃	1922	
機張 〃	1913	金海 〃	1925	
閑山 〃	1913	長承浦 〃	1925	
方魚津 〃	1913	三千浦 〃	1926	
鎮海 〃	1921	欲知 〃	1926	

資料: 名漁協沿革 參考

- 7) 李滿基著: 韓國經濟論, 日新社, 1967, p. 111
- 8) 釜山水産大學論文集: 前掲書 p. 5.
- 9) 釜山數市著: 前掲書 p. 425.
加藤真孝著: 朝鮮漁業組合制度要論, 朝鮮水産會刊, 1933 pp. 1~2
- 10) 釜山水大論文集: 前掲書, p. 10.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1)

는데 이가운데는 日本人도 770名이나 加入되 있었던 것으로 보며¹¹⁾ 1929年의 朝鮮漁協令이 制定 되기까지 17年間 이 승은 存續하였던 것이다.

다. 1929年의 朝鮮漁業令 및 朝鮮漁業組合規則에 依한 組合

그동안 韓國의 漁業이 漁具 漁船 漁法等에서 急激히 開發되고 社會全般의 事情 特히 經濟 狀態의 顯著한 變革이 있었으므로 全文 28條條에 不遇한 簡單한 漁業法令만로서는 發展하 는 漁業과 社會의 趨勢에 鑑하여 漁業全般을 規律하기 어려웠다는 見과 日本人의 韓國沿岸 에서의 漁業活動을 合法的으로 保障하기 爲하여는 漁業組合에 對한 外國人組合員加入을 緩和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1911年의 漁業令 및 漁業組合規則을 補完할 수 있는 새로운 漁業制度와 組合規則의 改正이 要請되었다.¹²⁾

그리하여 前記 1911年의 漁業令과 그 規則을 廢棄시키고 1929年 4月 制令 第1號로 全文 78條 附則 6條로된 「朝鮮漁業令」과 同年 12月 10日 朝鮮總督府令 第114號로 全文68條 附則 4號로 構成된 漁業細則인 「朝鮮漁業給規則」을 各各 制定하여 1930年 5月부터 實施함으로 써¹³⁾ 또다른 새로운 組合들의 設立을 보게 되었는데 固城漁業組合을 비롯한 8個漁業組合이 이 승을 契機로 組織되었으며 現在의 忠武市漁協도 이 무렵 誕生되었다.

〈表 7〉 1929年의 朝鮮漁業令에 依한 組合

組 合 名	設 立 年 度	組 合 名	設 立 年 度
固城漁業組合	1930	統營漁業組合(忠武市漁協)	1940
南海 〃	1932	馬山 〃	1940
城浦 〃	1938	熊東(昌原郡漁協)	1946
冠浦 〃	1938	亭子 〃	130
			9

資料: 名漁協沿革 參考

이 朝鮮漁業令과 組合規則은 1933年에 와서 그 一部가 改正되기는 하였으나 1945年 8月 15日의 數十年間의 屈辱의 日本의 統治下에서 벗어나는 感激의 解放을 맞이한 以後에도 1946年 5月28日 美軍政法令 第90號에 依據 舊漁業團體의 存立資格이 認定됨으로써 그대로 存續되다가 現在 施行되고 있는 水産業協同組合法이 法律 第1013號로 1962年 4月1日 公希施行된 후 廢止되었다.

그러나 當時의 組合이 漁業權取得과 管理主體로서, 共同施設의 所有者로서, 販賣 購買 信用 等 經濟事業體로서 機能이 許用되고 있었으나 組合員加入에는 強制性을 띠었고 組合의 任員은 行政權에 依하여 主로 任免됨으로써 本質的協同組合機能의 追求보다는 日本帝國

11) 金仁台·朴九乘 著, 水産經濟論, 太和出版社, 1962, p. 319.

12) 水協中央會刊, 韓國水産發達史, 1966, pp. 470~471.

13) 帝國行政學會刊: 朝鮮總督府法規輯覽 第5卷, 産業編, 1935, pp. 489~736.

主義行政의 侍女로서, 統制經濟의 配給機關으로서의 機能 以上을 發揮하지 못하였다.¹⁴⁾ 따라서 漁協運營은 官僚的 他律的運營이 特徵이었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¹⁵⁾.

오늘날 地區別漁協의 任職員相當數는 當時의 組合運營에 參加해온 人士들이 相當數에 達하고 現存水協法과 組合運營方式 또한 當時의 이와같은 組合認識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 데서 現在까지 地區別漁協이 近代의 協同組合으로서의 發展을 阻止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三. 漁協의 組織과 運營

1. 組織形態와 單位組合의 意義

協同組合運營에 있어서 單位組合의 意義는 聯合組織이나 系統組織과 달리 個別的獨立小生産者들과 直結된 基本組織이라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 水産業協同組合에 있어서 單位組合이란 現況에서 밝힌 地區別漁業協同組合과 業種別協同組合, 水産製造業協同組合을 말하며, 聯合組織이란 各 單位 漁協과 水産製造業組合이 構成員이 되어 組織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가르킨다. 그러나 嚴格한 意味에서 보면 水協系統의 組合들은 單位組合의 橫的 聯合組織形態라 볼 수 없으며 組織의 性格, 形態, 그리고 그 機能面에서 單位組合의 上層에 있는 統轄指導組合으로서 上, 下의 系統體系를 이루고 있는 從的 聯合形態인 系統組織이라 할 수 있다. 各國의 協同組合 發展過程에서 取하는 組織形態의 樣相 原理는 組合員과 直結된 多數小規模組合이 그들의 單位組合을 結成하는 構成員의 組織選好 原理와 마찬가지로 組合自身들의 必要에 따라 보다 廣範圍한 地域을 中心으로 地域內의 組合끼리 相互協同하는 聯合形態로 組織을 結成하고 이 聯合組織은 다시 全國單位의 組合을 組織하게 되며 이와같은 組織原理에 依하여 마침내 國際的 協同組合同盟까지 結成하게 되는 것이다. 大體로 協同組合의 聯合形態는 單位組合 → 各地方 또는 機能別 聯合組織 → 中央組織의 三段階 以上의 組織形態를 取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나, 우리나라 水協系統組合은 單位組合 → 中央組合의 二段階 組織인 점에 特徵이 있다.

<圖 1> 協同組合聯合會形態

	1段階	2段階	3段階	4段階
水協	漁民——單位組合	地區別漁協 業種別 水産製造業組合		水協中央會
農協	農民——單位組合	里洞組合 特殊組合	市郡組合	農協中央會
日本 漁協	漁民——單位組合	漁沿海漁協 內水面 漁業生産組合 水産加工組合	市郡聯合會	縣聯合會——全國聯合會

14) 張設鎔著: 水協經營論, 前掲書 p. 6.

15) 加藤孝著, 前掲書, p. 14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1)

系統組織形態를 取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農協도 역시 水協과 마찬가지로. 다만 農協이 水協과 다른점은 單位組合과 中央會의 中間에 單位組合인 里洞組合을 構成員으로 하는 系統組織으로서 郡組合이 位置하고 있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農漁業協同組合의 全國中央組織과 州組織 밑에 縣單位組織 그리고 그 下部組織으로서 郡單位와 村落協同組合이 組織된 多段階 組織形態이나 政府가 協同組合局을 行政府의 經濟省內에 두고 中央組織을 통한 系統組織의 指導, 監督 體系를 가지고 있는 점은 우리의 유사하다.¹⁶⁾

그러나 日本의 漁業協同組合 組織形態는 嚴格한 聯合形態를 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即 日本水協法¹⁷⁾에 規定한 水協의 種類를 보면 漁業協同組合 漁業生産組合 漁業協同組合聯合會, 水產加工協同組合 및 水產加工組合聯合會의 5種類 協同組合으로 分類하고 있으며 沿海漁協(地區別漁協)과 內水面漁協, 生産組合등 單位組合은 各市, 郡地域聯合會와 市郡地域聯合會는 縣單位(우리의 道水準) 聯合組織을 통하여 全國聯合會를 組織하게 하고 있다.

大體로 協同組合이 自發的 發生過程을 거쳐 發達해온 西歐諸國에서는 機能別 職能別 그리고 地域別로 組合의 聯合形態가 發展한데 反하여 政策的, 制度的要請에서 非自動的으로 조직된 亞細亞諸國의 協同組合은 日本을 除外하고는 거의 從的系統組織을 重視하여 強力한 政府 또는 中央系統機關의 支配體制的性格을 띠게 된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農協이나 水協 같이 系統組織을 重要視하는 協同組合組織形態에서는 單位組合 보다 上位의 系統組合이 政策的 支援과 育成에서 優先權을 確保하게 되고, 單位組合은 上級組合育成과 存立을 爲한 手段的存在로서 轉落하고 마는 結果를 가져 오는 것이 一般的이다.

組合員의 組合選好性이 적은 社會에서는 本質的으로 組合選好에 依한 同心圓의 聯合組織은 期待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¹⁸⁾ 오늘날까지의 우리나라 農水產業 協同組合政策이 下向式으로 造成됨으로써 中央機關의 劃一的 命令系統 確立과 異狀的肥大만 가져왔을 뿐 單位組合의 虛脫을 免치 못하였다는 것은 組合組織의 形態上에서 오는 결함이라 아니할 수 없다.

漁民이 組合의 主體가 못되고 一線組合은 赤字를 보아도 中央會는 黑字를 實現해야 하겠다는 決算方式등은 한결같이 下向式組合運動이 빛은 矛盾이라 하겠다.

우리가 바라는 理想的組合運動이 上向式發展을 意味한다고 할때, 오늘날 韓國의 水協運動은 그 方法이 顛倒된 感이 없지 않으므로 組合運動의 底邊構造를 擴大構築하기 爲해서는 單位組合의 重要性이 再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漁村契, 單位組合 中心의 組合政策이 強力히 主軸으로써 上級系統組織을 받들고 自生的으로 일어 설 수 있는 上向式協同組合運動이 造成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漁協

16) 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 主要國의 協同組合制度, 立法參考資料 第172卷 1973. p. 193.

17) 日本水產廳刊: 水產業協同組合制度史 5卷 附錄. 日本水協法 第2條. 3條參照 1971. 3. 21

18) 趙東弼, 李壽山 共著: 入門農業協同組合論, 精研社, 1962. p. 45.

의 自主 自立을 促進하는 最善의 方法임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現在の 中央會를 上層支配機構로 하는 強力한 中央集權的 組合運營體系와 中央會中心의 協同組合 政策을 單位組合爲主로 轉換해야 할 것이다.

2. 組合員加入動態와 漁村契組織

協同組合成敗의 關鍵은 組合員의 構成問題와 組合의 業務區域에 달려있다. 이것은 協同 組合의 가장 큰 特徵의 하나가 相互扶助에 立脚한 同志的結合體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構成員의 均質性, 經濟力, 協力意識 등은 組合의 組織力을 意味하며 業務區域은 組合經營의 經濟的基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組合員의 多寡와 區域의 廣狹이 반드시 組合發展과 항상 函數關係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兩者는 相互對立關係가 成立되기도 한다. 實際 組合經營實態를 分析하더라도 그와같은 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組合員數가 많고 業務區域이 넓을수록 組合經營이 健全한 結果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反對의 境遇도 있다는 것이다. 一例로서 鎭海市漁協 境遇를 보면 慶南 15個地區別 漁協中 組合員數와 業務區域이 가장 작은데도 每年 成果面에서 黑字를 示願하였고 內的充實을 期하고 있다. 이는 組合員의 協力體系가 強하고 組合員의 參與度가 높으며 組合運營에 從事하는 者들의 責任感이 強하여 組合을 効率的으로 運營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組合이 小區域인 수록 構成員의 結合度가 높고, 經費가 적게 所要되며, 共同事業의 運營, 協業化 등의 示圖가 容易하다는 小規模組合의 利點을 反影한 좋은 例다. 그러나 規模의 限界, 利用範圍의 制限을 免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對身 區域이 넓고 組合員이 많은 경우 物資의 大量取扱이 可能하여 信用販賣購買利用加工 등 事業이 技術的 經濟的으로 專門化하여 組合運營의 Cost를 節減케 하는 「規模의 經濟性」을 누릴 수 있게 되고 外部經濟와의 對應能力確保가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組合員과의 一體感을 가지는 것과 運營의 官僚化를 수반하게 되는 缺點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沿岸水產經濟의 構造에서 漁協의 機能을 어느 程度發揮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漁協이 持續的 經營體로서 存立하는데 가장 有利한 規模는 어떻게 定할 것인가 하는 適正規模論에 關한 問題가 組合과 組合員의 數, 區域, 事業物量取扱範圍, 職員數 등 最有利 結合方法을 中心으로 充分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但 單位漁協은 活動範圍가 漁村과 漁民組合員에 限定되어 있으므로 組合의 區域과 構成員의 數는 組合의 事業量과 規模를 決定하는 重要要因인 것만은 事實이며 그 때문에 群小亂立組合의 整備는 業務區域의 擴張에 根本目的이 있었다.

現在 慶南 15個漁協은 모두 市, 郡單位區域으로 組織되어 있으며 여기에 加入된 組合員數는 1972年 現在 22,121명으로서 組合當平均 1,473명 꼴이다. 그리고 漁村契組織數는 464個로서 組合當平均 31個 漁村契를 두고 있는 셈이다.

組合員加入率과 漁村契組織率을 水產統計上的 管内漁家戶數와 漁村契組織이 可能한 自然部落數와 比較하면 漁家の 組合員加入率은 61.6%이며 漁村契組織率은 60.6%로서 管内漁家 35,860戶中 若 40%인 13,739戶와 總 905개의 漁村自然部落中 445個의 漁村이 아직도 地方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1)

漁協과의 關係를 斷切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組合員加入에 對한 年度別動態를 보면 1963년부터 1969년까지는 漁民의 組合員 加入이 繼續늘어 났으나 1969年以後 1972년까지는 9.2%減少하였고 全國的으로는 같은 期間에 12%나 줄었다.

漁村契는 1963년부터 1972년까지 16個 漁村契가 붙었으나 漁民數와는 달리 自然部落數의 固定性과 漁村契의 協業化推進을 爲한 大單位統合을 서둘러 있으므로 現在以上의 漁村契組 織率을 期待할 必要도 없는 일이지마는 漁民의 組合員加入率低羈와 脫退率의 增加는 組合 運營이 漁民과 組合員에게 어느 정도 好惡을 얻고 있는가를 再檢討할 必要가 있음을 示唆 하는 것이다.

組合別로 볼때 鎭海市 河東郡 巨濟郡 蔚山市 釜山市 등 5個 組合은 發足當時보다, 그리고 昌原郡 馬山市 忠武市 梁山郡 統營郡 등 5個 組合은 1972年 以前보다 各各 減少하고 있어

조 합 원 가 입 장 황

(表 8)

(組合員 單位: 人)

漁 協 別	年度別	1963		1965		1969		1972		조 합 원 증 가 율 72/63
		組 合 員	漁 村 契	組 合 員	漁 村 契	組 合 員	漁 村 契	組 合 員	漁 村 契	
固城郡 漁 協		933	19	956	19	1,189	39	728	19	27.3%
南海郡 <		1,508	70	1,764	70	2,262	72	2,653	74	75.8%
昌原郡 <		504	10	534	10	872	10	617	10	21.4%
馬山市 <		418	18	492	18	849	25	712	25	103.1%
三千里市 <		835	17	991	17	1,698	22	1,813	25	217.1%
鎭海市 <		459	21	581	21	368	24	431	14	-6.5%
忠武市 <		1,893	49	2,116	49	2,635	138	2,069	56	109.3%
河東郡 <		1,160	25	1,355	25	1,465	24	1,136	19	-2.1%
金海郡 <		264	10	470	10	549	34	625	10	136.7%
梁山郡 <		1,764	29	2,394	29	2,293	30	2,540	30	43.9%
巨濟郡 <		2,905	69	2,992	76	3,219	77	2,840	77	-2.3%
蔚山市 <		1,900	18	1,818	18	1,905	17	1,935	17	-1.6%
統營郡 <		1,757	46	1,862	46	2,077	46	2,070	47	17.8%
蔚州郡 <		1,739	18	1,160	18	1,263	26	1,241	18	40.0%
釜山市 <		1,170	22	1,232	22	1,355	23	831	23	-40.7%
計		8,276	448	20,717	456	24,160	466	22,121	464	169.2%
全 國 計		101,356	2,061	112,379	2,069	136,294	2,229	121,568	1,854	19.9%
平 均	慶南	552	29.8	1,381	30.4	1,610	31.1	1,474	31	167.2%
	全 國	1,448	29.4	1,605	29.5	1,947	31.8	1,736	26.5	19.9%

資料: 水協慶南支部提供

水産經營論集

農民의 農協加入率 90%라는 全農民農協化하는 現象과는 對照的으로 漁民의 漁協기 普及率이 뚜렷하다.

한편 이들 加入組合員의 經營形態는 1970年 水協資料에 依할때 漁業從事者가 78.8% 養殖業從事者가 19.7% 水産製造業從事者가 1.5%이며, 이들의 漁業依存度는 漁業專業者 32.7% 他産業 特히 農業과의 兼業組合員이 46.3% 被傭者漁民組合員이 21%로 各各構成되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같은 慶南의 地區別漁協組合員의 經營形態가 全國漁協組合員 그것과의 特徵은 養殖業從事者의 加入比率이 낮고 被傭者組合員의 構成이 높은데 있다.

또한 組合員들의 漁業種類는 共同漁場入漁者가 2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一本釣漁業(48.8%), 延繩漁業(10.7%)등 順이며, 兼業者組合員의 50%以上은 沿岸地先共同漁場에 主로 매달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表 9〉 組合員의 經營形態 (1970)

		全 國	構 成	組合員加入率	慶 南 (부산포함)	構 成	組合員加入率
漁 家 經 營 形 態	經營者家口	149,107戶	76%		18,226戶	50.8%	
	被傭者家口	45,494戶	24%	33.5%	17,634戶	49.2%	29.6%
	計	194,601	100.0	71.8%	35,860	100.0	69.4%
	專業者家口	22,739戶	11.6%		4,526戶	12.6%	
	兼業者	126,368	64.4%	61.5%	13,702	38.2%	84.1%
	被傭者	45,494	24.0%	33.5%	17,634	49.2%	29.6%
	計	194,601	100.1%	71.8%	35,860	100.0%	69.4%
組 合 員 經 營 形 態	漁業從事組合員	86,097戶	61.5%		19,637戶	78.8%	
	養殖業	52,454	37.5%		4,923	19.7%	
	水産製造業	1,298	1.0%		352	1.5%	
	計	139,849	100.0		24,912	100.0	
	專業者組合員	46,610戶	33.3%		8,148戶	52.7%	
	兼業者	77,961	55.7%		11,530	46.3%	
	被傭者	15,278	1.1%		5,234	21.0%	
	計	139,849	100.0		24,912	100.0	

資料：水産統計年報，水産廳，1972. p-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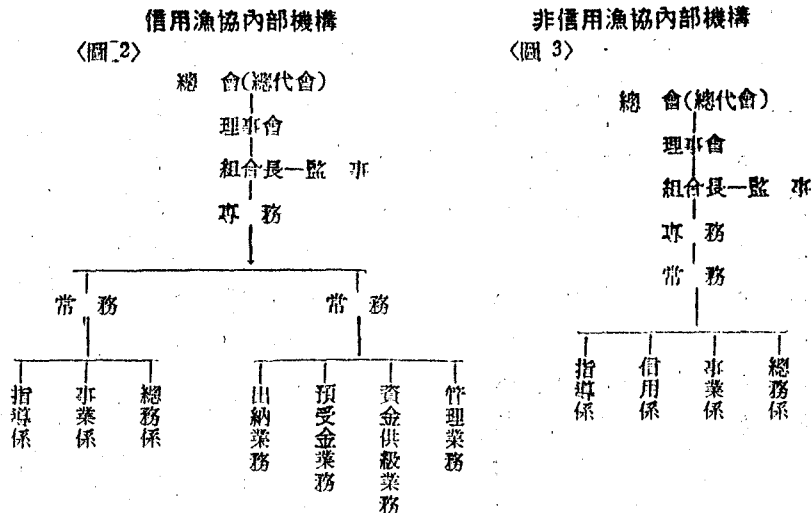
水協中央會，會員組合實態調查報告書，1970. pp. 5~105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1)

이로써 慶南地方漁協의 組織基盤을 볼때 業務區域은 이미 整備統合하여 市郡原則을 지키고 있으므로 農協과 差가 없지마는 組合員數와 그 下部組織에 있어서는 1972年現在 平均組合員 15,791명과 漁協單位規模에 육박하고 있음 而單位組合을 下部組織으로 삼고 있는 農協市郡農組合에 比하면 매우 未弱한 狀態에 놓여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3. 漁協의 內部組織과 運營

市郡을 一團으로하는 慶南의 地區別漁協들은 平均 1,474名の 組合員과 31個의 漁村契를 組織基盤으로 삼고 281,671천원의 資産과 年間 347,287천원의 事業物量을 管理, 運營하기 爲하여 平均 34名の 任職員을 確保하고 있으며 總會, 總代會, 理事會, 組合長, 監事등의 內部管理 組織을 두고 있다. 그리고 漁協의 事務 및 業務活動은 組合長→專務→務常→一般 職員の 階層體系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總務部署, 事業部署, 信用部署, 指導部署등의 業務部署 中心으로 對漁民 및 對組合員奉仕活動에 組織的으로 臨하고 있다.



信用業務取扱漁協은 信用常務와 一般事業常務로 2人的 常務를 두고 있으나 非信用漁協은 常務一人이 信用 經濟 指導 總務의 一切業務를 擔當하고 있음이 一般的이다. 漁協任職員의 數는 5人以上の 非常任理事와 1人的 監事, 1人的 組合長을 합쳐 7명내지 8명으로 構成되어 組合마다 거의 一定하나, 職員の 數는 平均 25名이지마는 規模와 事業量에 따라 組合別로 다르다. 金海漁協 같은 小規模組合은 不過 7名の 職員밖에 없는데 反해 釜山市漁協의 경우는 89名이라는 많은 職員을 가지고 있으며 委販場의 臨時職員까지 합치면 100餘名 以上에 이른다.

漁協의 管理能力을 評價할 수 있는 이들 任職員의 學歷水準을 보면 國卒 7.6% 中卒 18.6% 高卒 49.7% 大卒 22%로서 漁協이 組合員과 漁民의 指導機關의 機能體로서는 大體로 낮은 편이며, 더욱이 自体教育活動의 欠如로 低水準의 學歷所指者인 任職員가운데 相當數는

〈表 10〉 慶南地方 漁協の 職員學歷(1972)

別區分	學歷				計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總 計	29名	71名	185名	87名	372名
平 均	1.8%	4.71%	2.3%	5.8%	24.7%
構 成	7.7%	19%	49.7%	23.4%	100%

資料：慶南地方漁協現況

漁協の 正常的業務能力을 갖추지 못하고 脫落할 可能性마저 없지 않다. 漁協이 漁村地域에 位置하고 末端被支配組織인 점에서 높은 學歷所持者의 選擇對象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單調로운 部內組織과 組合運營의 專制的性格으로 말미암아 職員의 創意力과 業務能

〈表 11〉 漁 協 別 任 職 員 數 (1972)

漁協別	區分	任 員	職 員				計	合 計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固城郡 漁協		7	1	2	6	2	11	19
南海郡 〃		8	2	6	15	5	23	36
昌原郡 〃		8	—	2	4	2	8	16
馬山市 〃		8	3	3	15	11	32	40
三千浦市 〃		7	6	6	9	14	35	42
鎮海市 〃		6	—	3	7	4	14	20
忠武市 〃		8	3	7	16	3	28	36
河東郡 〃		8	2	6	4	4	16	24
金海郡 〃		5	1	2	3	1	7	12
梁山郡 〃		6	3	4	11	1	19	25
巨濟郡 〃		7	2	6	17	3	28	35
蔚山市 〃		7	3	9	19	4	35	42
統營郡 〃		8	1	4	6	1	12	20
蔚州郡 〃		8	1	3	4	2	10	18
釜山市 〃		8	1	8	50	30	89	98
計		109	29	71	185	87	372	481
平 均		7.3	1.9	4.7	12.3	5.8	24.8	32

註：職員은 現在員數임.
資料：水協 慶南支部 提供

漁業協同組合의 經營實態에 關한 研究(1)

력을發揮할 수 있는 動機(motivation) 誘引이 없고 個人的 take off의 展望마저 흐리기 때문에 當初 資質이 우수한 者도 一旦漁協에 들어오기만 하면 能力이나 사명감을 充分히發揮할려고 하지 않으며 結局 漁協水準으로 떨어지고 마는 傾向이 있다.

그러므로 現在와 같은 漁協의 内部組織 및 運營方法으로서의 漁協經營의 革新이 이 實務職員의 손에 依해 實現되리라고는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漁協의 運營은 直接組合員이 漁協運營에 參與하도록 하는 民主的 經營方式을 擇하고 있으나 多數組合員의 同時的共同參與는 不可能함으로 組合의 經營은 組合長과 專務에게 委任되어있는 專門經營形態를 取하는 이른바 Richard Phillips가 말한 일종의 遙有制度(absent ownership)에 依하여 이루어지고 있다.¹⁹⁾

그러므로 組合員의 組合經營에 參與하는 機會와 方法은 總會(總代會)와 理事會의 議決機關을 통해서 組合經營者(組合長과 總代)를 選出하고 運營方針을 決定하는데 그치고 있으면서도 最近의(1973年9月) 組合長任員臨時措置法은 이 最少限의 參與機能마저도 發揮하지 못하도록 制限하고 말았다.

그리고 漁協運營을 規律하는 內規, 職員의 給料水準, 幹部職員(專務, 常務)의 任免權마저 外部에서 獨自의으로 行하도록 되어 있으며 事業計劃과 收支豫算의 策定 및 承認權도 中央機關에 歸屬되어 있으므로 運營의 自律性은 完全히 喪失된 狀態다.

이로 因하여 漁協의 年間運營規模를 確定하고 執行段附에 들어가는 事業計劃과 收支豫算은 漁協運營管理를 爲한 見積書로서 統制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으며 費用支出을 爲한 根據로서만 使用될 뿐이다.

이와같이 漁協運營이 主體인 組合員을 意識하지 못한 채 「第2의 源泉에서 經營方針이 決定되며 意志가 發動되는 非正常的 運營의 發現方式」은 굳이 西歐社會의 協同組合發展事例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水協法이 內包하고 本質的見地와 精神에서 보아 역시 衍背인 것을 否定할 수 없게 된다.

勿論 單位漁協運營에 있어서 이와 같은 外部의 毒 罨은 干與는 窮極的으로 單位漁協의 合理的인 指導와 育成을 爲한데 있는 것이며 또한 現實的으로 政府나 水協中央會의 干涉을 받지 않을 수 없는 不可避性이 있다하더라도(後述) 問題는 그와 같은 理由로 因하여 支配權을 強化하는 方法으로 수 많은 報告書를 徵求하고 갖가지 指示를 남발하며 間歇的으로 감사권을 發動함으로써 組合은 組合員을 意識할 機會를 잃게 되고 많은 努力이 組合本然의 活動에 投入되는 것을 制限하게 되는데 있다.

19) Richard Phillips는 그의 "Economic nature of the cooperative association에서" 協同組合(Cooperation Association)을 多數의 firm에 依하여 組織된一種의 公同企業(Common or Common enterprise)으로 보고 있으며, 組合運營은 組合長과 經營者에게 委任된 所有者의 遙有制度(absent ownership)에 依하여 專門的으로 運營되는 經營形態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組合의 所有는 組合員(個個 firm)이 하지 經營은 經營擔當者가 맡고있는 所有와 經營의 分離(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現象이라 했다. (Richard Phillips: Economic Nature of The Cooperative Association,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 35 February, 1953)

水産經營論集

예를 들면 慶南 B漁協의 경우 1個月間 무려 840件的 公文을 接受處理하고 672件的 公文을 應申해야 함으로 每月總 1,500件以上の 公文書를 處理해야 하는 時間과 勞費는 行政機關을 방불하게 하고 있는 뿐 아니라 定期報告書의 種類만해도 月 56種 59件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서 各漁協은 일마나 많은 努力이 非固有의 業務活動으로 말미암아 浪費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表 12> 漁協의 月間 公文書 受發現況

種別	受發對象		
	系統機關	其他機關	計
接受公文	728件	212件	840件
發送公文	480件	192件	672件
計	1,128件	384件	1,512件

資料: 慶南B漁協 1973. 10月分 公文書受發發報.

<表 13> 漁協의 各種定例 報告書 內容

소관 사업별	보고서명	건수	보고구분	보고대상지
1. 총무 소관	① 직원동태 보고서	1 건	월 보	수 협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보고	3 〃	〃	한국은 시, 도
	③ 폐지 수집 보고	1 〃	〃	수 협
	④ 직원실무 교육결과 보고	1 〃	〃	수 협
	⑤ 서정쇄신 확립결과 보고	〃	〃	〃
	⑥ 서정쇄신 사례결과 보고	〃	분기보	〃
	⑦ 조합운영 개선실적 보고	〃	월 보	〃
	⑧ 전무과제 이행 보고	〃	〃	〃
	⑨ 수지에산 및 사업계획서	〃	연 보	〃
	⑩ 년도말 결산 보고	2 〃	〃	〃
	⑪ 년도가 결산 보고	1 〃	〃	〃
	⑫ 조합원 변동상황 보고	1 〃	월 보	시, 군, 수협
	⑬ 월말 실적 보고서	1 〃	〃	〃
		소 계 14종 20건		
2. 지도 사업 소관	① 지도 사업 실적 보고	1 건	월 보	수 협
	② 시민 어촌계육성 상황 보고	1 〃	〃	〃
	③ 장학생 수학상황 보고	1 〃	〃	〃
	④ 새마을(어촌) 건설 사업실시 보고	1 〃	〃	〃

漁業協同組合의 經營狀態에 關한 研究(1)

	⑤ 위탁판매고 조사 보고	2	〃	〃
	⑥ 수산 생산고 조사 보고	2	〃	〃
	⑦ 조합원 가입동태 보고	1	〃	〃
	⑧ 수산 피해상황 보고	1	〃	〃
소 계	9종 10건			
신용 사업 소관	① 예금 및 시제금 일보	1 건	일 보	수 령
	② 평균잔액 보고	1	순 보	〃
	③ 식용사업 실제 보고서 제출	1	월 보	〃
	④ 예금지급 준비금 상황 보고	1	순 보	〃
	⑤ 예금, 대출금 거래별 조사 보고	1	월 보	〃
	⑥ 예수금 동태상황 보고	1	〃	〃
	⑦ 예금담보 대출금 상황 보고	1	〃	〃
	⑧ 판매 사업적립금 증서 대출보고	1	〃	〃
	⑨ 대출금 총괄 월보	1	〃	〃
	⑩ 식용 보증기금 취급상황 보고	1	〃	〃
	⑪ 신규농류 사업집행 보고	1	〃	〃
	⑫ 피해보 구자금 실적 보고	1	〃	〃
	⑬ 위판 2할공제 실적 보고	1	〃	〃
	⑭ 담보 종류별 대출총괄 보고			
	⑮ 동일 인에대한 대출금 내역 보고	1	〃	〃
	⑯ 연체 대출금 회수상황 보고	1	〃	〃
	⑰ 농어선 소득증대 사업자금 회수실적 보고	1	〃	〃
	⑱ 어촌 진흥자금 관리 상황 보고	1	〃	〃
	⑲ 신용 보증 용자 월보	1	〃	〃
	⑳ 보증물 징수할 송금상황 보고	1	〃	〃
	㉑ 이차 보상 대출금 상황 보고	1	〃	〃
	㉒ 농수산자금 이차보상 집계분기 보고	1	〃	〃
	㉓ 이차보상 대상지급 개인할 명에 보고	1	〃	〃
	㉔ 은행 감독원 검사사항 정리원 및 보고	2	〃	〃
	소 계	24종 25건		
경제 사업 소관	① 동력개량 사업집행 결과 보고	1 건	월 보	수 령
	② 수산용기 포장 개선사업 실적 보고	1	〃	〃

水産經營論集

	③ 경제 사업자금 집행상황 보고	1	〃	〃
	④ 경제사업 실적 보고	1	〃	〃
	소 계 4종 4건			
기 타	① 대출원리금 회수계획 보고	1	〃	〃
	② 〃 회수 실적 보고	〃	〃	〃
	③ 결산목표 및 실적 보고	〃	〃	〃
	④ 가계정정리 상황 보고	〃	〃	〃
	⑤ 추가개정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서	〃	〃	〃
	소 계 5종 5건			
총 계	56종(일보, 순보, 월보 총 64건)			

資料: 慶南, B漁協, N漁協 提供, 1973. 10월 현재

〈表14〉 漁協의 受監對象 및 回收 (年間)

水協中央會 監査	3回 (文部包含)
水産廳 〃	1回
韓銀감독원 〃	1回 (信用漁協에 限함)
감사원 〃	1回 (補助事業에 限함)
市, 郡 〃	1回
漁協自体 〃	2回
計	9〃

資料: 慶南 B漁協 提供

定期監査와 여기에 自体監査까지 包含하면 一線 單位漁協은 年中 繼續 受監態勢에 突入해 있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漁協의 年二回 決算制度와 이에 따른 元利金完全回收作戰은 그것이 不振했을 경우 任職員의 身上에까지 責任이 追窮됨으로 年間 二個月 以上을 다른 業務는 麻痺되는 狀態에서 全任職員이 여기에 動員된다. 이때 漁協은 하나의 金錢貸付業者(高利貸資本)의 氣質과 手段까지 講究하게 되며 마침내 이와같은 漁協의 努力으로 水協은 目標決算(黑字)에 到達되나 元利金을 償還해야 하는 漁協과 漁民의 貸借對照照表上에는 赤字가 記錄되는 일 이 많다.

以上은 慶南地方漁協의 例에 不過하지만 全國漁協도 마찬가지로의 現實임을 勘案할때 單位 漁協의 運營은 ① 内部經營組織이 거의 形式化되어 있고 ② 뚜렷한 漁協自体의 基本目標나

20) 外部監事權은 水協法 第151條 내지 153條 및 156條 同附則 第12條에 根據를 두고 있다.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1)

指向點을 設定하지 못한채 他에 依하여 이끌리어 간다고 보는것이 오히려 妥當하며 (3) 貧弱한 漁協의 勞動 資本 組織 그것마저도 漁民의 事業의 積極的展開과 漁協自体收益增大을 爲하여 集約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四. 漁協의 經營規模와 財政狀態

1. 漁協總資本規模의 對比

漁協에 있어서 經營規模를 決定짓는 要素는 組合員數와 業務區域, 資産 및 資本, 事業取扱高 및 收支規模와 職員의 數 등이므로 이들 諸要素를 綜合한 狀態의 規模를 漁協經營規模라 해야하나 여기서는 漁協의 經營活動과 資本調達의 能力을 直接 代表하는 總資産 내지 總負債의 規模를 狹意의 經營規模라 가정한다.

이 規模를 本協中央會의 組合實態調查資料와 慶南地方漁協들의 財務諸表에 依據比較하면 다음 表와 같다.

〈表 15〉 組合別負債, 債資本規模(1972) (單位: 1,000원)

區分 漁協別	信用事業負債			經濟事業負債			一般事業 負債	自己 資本	負債資本 總計
	借入金	其他	小計	借入金	其他	小計			
固城郡漁協	164,654	50,628	215,282	15,545	309	15,854	1,085	4,517	236,738
南海郡 >	139,069	90,902	229,971	14,563	4,085	18,648	2,492	146,192	397,303
昌原郡 >	149,828	5,180	155,008	19,045	12,036	31,081	587	23,428	210,104
馬山市 >	43,672	106,613	149,685	73,294	10,690	83,984	25,510	62,667	321,846
三千浦市 >	93,437	147,934	241,371	32,663	389	33,052	16,554	89,674	380,651
鐵海市 >	23,254	191	23,445	2,750	440	3,190	208	11,535	39,378
忠武市 >	145,023	165,955	310,978	41,473	6,129	47,602	15,692	50,034	424,305
河東郡 >	50,859	2,115	52,974	13,375	35,629	49,004	2,056	65,130	169,164
金海郡 >	39,812	1,216	41,028	26,349	51,785	78,134	5,596	5,368	130,126
梁山郡 >	114,802	45,098	159,900	14,770	7,601	22,371	20,510	28,186	230,967
巨濟郡 >	189,593	20,387	209,980	5,435	15,605	21,041	4,322	38,219	273,562
蔚山市 >	36,885	1,371	38,256	55,070	956	56,026	20,515	26,960	141,757
營統郡 >	83,642	6,090	89,732	9,363	6,841	16,204	7,009	28,763	141,707
蔚州郡 >	52,149	8,035	60,184	7,191	9,415	16,606	15,163	6,986	98,539
釜山市 >	465,105	422,087	887,192	60,581	10,014	70,595	37,866	91,362	1,087,015
計	1,791,184	1,073,800	2,864,984	391,467	171,925	563,392	175,165	678,621	4,283,162
平均			190,998					45,241	281,761

資料: 1972年度, 慶南의 組合別 貸借對照表에서 作成.

即<表 15.16>은 보면 漁協의 經營規模는 1972年現在 全日 70個 漁協(地區別) 平均 281,971천원 慶南 15個 漁協 平均 281,761천원이며 慶南은 1963年以後 現在까지(1972) 10倍規模의 擴大를 나타냈다. 漁協別로는 釜山市 漁協이 1,087,015천원으로 最大規模이고 蔚州郡 漁協이 98,539천원으로 慶南 最少規模組合임이 밝혀졌으며, 釜山市 漁協을 비롯한 馬山市 三千浦市 忠武市 등 主로 信用業務를 兼하면서 都市에 位置한 漁協들은 規模가 한결 같이 크고 反對로 蔚州郡 漁協을 爲始한 鎭海市 統營郡 蔚山市 金海郡 河東郡 昌原郡 등 漁村에 散在한 非信用 漁協들은 大部分이 弱少規模를 免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比較的 大規模組合과 弱少組合의 規模差는 $\frac{1}{3}$ 에서 심지어 $\frac{1}{10}$ 以上으로 懸隔할 뿐 아니라 固城郡 漁協을 비롯한 8個 漁協이 全國 내지 慶南의 平均規模 以下로서 階層分布로 보아 慶南의 漁協들은 大體로 零細 經營規模라는 事實이다.

그리고 비록 漁協이 10年間 10倍의 經營規模가 增加하였다 하더라도 農協 市郡組合과 比

漁協別 資產規模 (1972)

<表 16>

(單位: 1000원)

區分 漁協別	信用事業資產			經濟事業 資 產	一般事業資產			資 產 總 計	構 成
	貸 出 金	其 他	小 計		固 定 資 產	其 他	小 計		
固城郡漁協	174,926	17,011	191,937	6,369	33,416	4,926	38,342	236,738	5.5
南海郡 <	148,400	96,892	245,292	67,156	83,856	48,484	84,855	397,303	9.3
昌原郡 <	127,614	8,397	136,011	24,733	36,371	12,989	49,360	210,104	4.9
馬山市 <	75,087	71,157	146,244	74,859	98,222	2,521	100,743	321,846	7.5
三千浦市 <	120,182	134,185	254,367	27,543	93,191	5,550	98,741	380,651	8.9
鎭海市 <	23,404	3,059	26,463	2,395	9,579	941	10,520	39,378	0.92
忠武市 <	241,423	80,315	321,738	11,040	83,258	8,269	91,527	424,305	9.9
河東郡 <	43,570	14,149	57,719	59,963	50,581	901	51,482	169,164	3.9
金海郡 <	39,812	2,059	41,871	60,731	12,276	15,248	27,524	130,126	3.0
梁山郡 <	121,051	42,104	163,155	28,406	34,183	5,223	39,406	230,967	5.4
巨濟郡 <	186,775	35,279	222,054	8,576	38,370	4,562	42,932	273,562	6.4
蔚山市 <	36,885	2,222	39,107	10,009	88,326	4,315	92,641	141,757	3.3
統營郡 <	83,637	11,229	94,866	11,516	7,276	28,049	35,325	141,707	3.3
蔚州郡 <	44,882	14,190	59,072	17,791	9,152	12,624	21,676	98,539	2.3
釜山市 <	577,686	309,517	887,203	65,534	98,874	35,404	134,278	1,087,015	25.5
計	2,044,934	842,165	2,887,099	476,621	776,931	142,491	919,422	4,283,162	100.0
平均			192,473	31,775			57,513	281,761 281,971	

資料: 1972年度 慶南의 組合別貸借對照表에서 作成

漁業協同組合의 經營實態에 關한 研究(Ⅰ)

較하면 18.7%에 지나지 않으며 慶南에서 가장 큰 釜山漁協 역시 農協 平均規模의 若 30%에 未達하는 經營規模임은 注目할 問題다.

〈表 17〉 組合平均資産規模 및 成長對比 (單位: 1,000원)

組合別	1963		1972		長成率
	金額	對比	金額	對比	
慶南漁協	平均 28,164	13.8%	281,761	18.7%	10.0倍
全國	98,185	48.2%	281,971	18.7%	2.8%
市郡農協	203,521	100.0%	1,499,957	100.0%	7.4%

資料: ①市郡農協平均計數는 1972年農業年鑑에서 作成
②對比는 市郡農協을 100으로 했을때의 漁協의 構成比임.

2. 財政狀態

漁業協同組合이 여러가지 事業을 行하기 위하여 많은 資金을 必要로 하나 그 資金은 크게 나누어 自己資金과 他人資金으로 2가지 뿐이다. 이 自己資金과 他人資金을 합친 總자금 이 漁協事業을 위하여 어떠한 資産에 投下되어 어떻게 運用되고 있는가 하는 財政構成 狀態를 財政狀態(financial situation) 또는 財政構造(financial structure)라 하며 이 財政狀態 내지 構造(健全與否)는 漁協의 事業活動과 事業成果를 保障하기 때문에 이를 分析하여 改善을 要할 點이 있나 없나를 摘出해 내는 것이 財務管理의 意義다. 一般的으로 漁協經營에 있어 財政構造의 缺陷으로 指摘되는 要因은 다음과 같다.²¹⁾

- ① 固定資産에 對한 過大投資
- ② 自己資本의 過少
- ③ 流動資産에 對한 過大投資
- ④ 賣上債權의 回收不良
- ⑤ 支拂能力의 不足

그러면 過然 慶南地方 單位漁協들의 財政狀態는 어떠한지 다음圖表로서 農協과 日本의 大規模組合의 B/S를 各各 比較하면서 檢討코자 한다.

圖表를 보면 漁協이나 農協, 日本의 漁協이 다 같이 信用事業에 全 資金이 投入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資金의 調達 역시 信用事業에 依存하고 있는 것과, 他人資本의 依存도가 높고 自己資本은 過少하다는 것이 共通의이다. 그 밖에서도 우리나라 漁協은 固定資産比率이 다른 組合經營體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높을뿐 아니라 그것이 自己資本 以上の 過大投資를 보이고 있는 점이 特徵이다.

21) 西正美著: 漁協財務分析の手引き 漁業協同組合經營センター 刊 1964. p. 15.

〈圖 4〉 協同組合의 財務構造對比

資 産 構 造	漁 協	信用事業資産	一般經濟事業資産	固定資産
	農 協	信用事業資産	一般經濟事業資産	固定資産
	日本漁協	信用事業資産	一般經濟事業資産	固定資産
資 本 及 負 債 構 造	漁 協	信用事業負債	一般經濟事業負債	自己資本
	農 協	信用事業負債	一般經濟事業負債	自己資本
	日本漁協	信用事業負債	一般經濟事業負債	自己資本

※ 漁 協：1972年度 慶南 15個 組名平均
 農 協：1972年度 全國 140個 市郡組合平均
 日本漁協：日本大規模漁協, 〈表19〉에서 作成

1972年の 慶南漁協平均經營規模 281,671천 원의 資産 및 負債의 構成比率을 보면 信用事業에 67.4% 經濟事業에 11.2% 一般事業에 21.4%와 信用事業負債에 65.8% 經濟事業負債에 13.1% 一般事業負債에 5.3% 그리고 固定資産比率 18.1% 自己資本比率 15.8% 流動資産比率 16.6%로 各各 構成되어 있어 發足當時인 1963년에 比해서는 많이 改善되었으나 如前히 運用資金의 一部集中, 資金調達의 外部 依存이라는 構造的 脆弱性, 不健全性을 克服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固定資産의 投資基準無視 自己資本의 確保基準未達등은 漁協의 收益性과 自律性保障에 問題가 될 가능성이 크다.

漁協과 農協의 財務構造 對比 (1972)

〈表 18〉

(단위 : 1,000원)

項目別	資 産				負 債 및 資 本			
	漁協(慶南)		農協(全國)		漁協(慶南)		農協(全國)	
	金 額	構 成	金 額	構 成	金 額	構 成	金 額	構 成
信用事業資産 및 負債	192,473	67.4%	1,132,615	75.5%	190,998	65.8%	1,199,242	79.9%
經濟事業資産 및 負債	31,775	11.2%	367,342	24.5%	37,559	13.1%	310,715	20.1%
一般事業資産 및 負債	57,513	21.4%			90,673	21.1%		
(固定資産 및 自己資本)	(51,725)	(18.1)%	(73,999)	(5.1)%	(45,241)	(15.8)%	(43,664)	(2.3)%
計	281,761	100.0%	1,499,957	100.0%	281,761	100.0%	1,499,957	100.0%

資料：農協中央金：農業年鑑 1973.
 慶南 15個 漁協 1972年度 B/S } 에서 作成

漁業協同組合の 運営實態에 關한 研究(1)

日本 漁協の 財務 構造 (1968年)

<表 19>

(單位：千圓)

	資 産			負 債	
	金 額	構 成		金 額	構 成
信用事業資産	3,098,531	79.4%	信用事業負債	3,184,973	81.5%
經濟事業 〃	257,678	6.6%	經濟事業 〃	155,431	4.0%
一般事業 〃	372,516	14.1%	一般事業 〃	81,569	17.0%
(固定資産)	(301,998)	(7.7)	自己資本	291,931	7.5%
計	3,903,661	100.0	計	3,903,661	100.0

資料：芳賀英昭,大規模漁協の經營指標について,日本漁協經營センター

p-18.

1968.

<表 20>

慶南漁協別 財務構造 (1972)

(單位：%)

漁協別	資 産 構 造					負 債 資 本 構 造				
	信用資産	經濟資産	一般資産	(固定資産 産比率)	計	信用負債	經濟負債	一般負債	自己資本	計
固城郡漁協	8.1%	2.7	16.2	14.1	100.0	90.9	6.6	0.6	1.9	100.0
南海郡 〃	61.7%	17.0	21.3	21.1	〃	57.8	4.6	0.9	36.7	〃
昌原郡 〃	64.7%	11.9	23.4	17.3	〃	73.8	14.7	40.4	11.1	〃
馬山市 〃	45.3%	23.4	31.3	30.5	〃	46.5	26.1	8.0	19.4	〃
三千浦市 〃	66.8%	17.3	25.9	24.4	〃	63.4	8.6	4.5	23.5	〃
鎮海市 〃	67.2%	6.1	26.7	24.4	〃	59.5	8.1	4.2	29.2	〃
忠武市 〃	75.8%	2.7	21.5	19.6	〃	73.2	11.1	6.0	11.7	〃
河東郡 〃	34.1%	35.5	30.4	29.9	〃	31.3	28.9	1.3	38.5	〃
金海郡 〃	32.1%	46.8	21.1	9.4	〃	31.5	60.0	4.4	4.1	〃
梁山郡 〃	70.6%	12.3	17.1	14.7	〃	69.2	9.6	9.0	12.2	〃
巨濟郡 〃	81.1%	3.4	15.6	14.0	〃	76.7	7.6	2.3	13.4	〃
蔚山市 〃	27.5%	7.2	65.3	62.3	〃	26.9	39.5	14.6	19.0	〃
統營郡 〃	66.9%	8.2	24.9	5.1	〃	63.3	11.4	5.1	20.2	〃
蔚州郡 〃	59.9%	18.2	21.9	9.2	〃	61.1	16.8	15.5	6.6	〃
岳山市 〃	81.6%	6.1	12.3	9.1	〃	81.6	6.4	3.7	8.4	〃
平 均	67.4%	11.2	21.4	18.1	〃	65.8	13.1	5.3	15.8	〃

資料：慶南 15個漁協 B/S에서 算出

가. 固定資産投資基準

漁協資金의 固定化傾向과 收益率의 低下를 막기 爲하여 漁協은 그의 會計 및 事業規約 그리고 水協의 財務基準에서 固定資産의 投資限度를 自己資金 以內로 規定하고 있다.²²⁾

即 固定資産(業務用)은 自己資本 이어야 하며 自己資本을 超過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漁協의 固定資産投資基準이다.

이와 같은 投資基準에 따라 算出된 慶南 15個漁協平均固定資産投資限度額은 45,241천원 인데도 實際 投資平均金額은 51,795천원으로서 14%나 超過하고 있으며 이것을 個個漁業別로 보면 超過比率이 2倍에서 7倍에 達하는 組合도 있다. (다음表 參照)

여기에 漁協의 固質的權權인 延滯貸出金까지 합하면(表 참조) 漁協의 平均固定性資金은

漁協의 固定資産 投資對比表 (1972)

<表 21>

(단위 : 1000)

區分 漁協別	固 定 資 産	自 己 資 本	限 度 過, 不 足	資 本 固 定 化 率
固城郡 漁 協	33,416	4,517	28,899	739.7%
南海郡 〃	83,856	146,192	△62,336	57.1%
昌原郡 〃	36,371	23,428	12,943	155.2%
馬山市 〃	98,222	62,667	35,555	156.7%
三千浦市 〃	93,191	50,034	43,157	186.2%
鎮海市 〃	9,579	11,535	△1,956	83.0%
忠武市 〃	83,258	89,674	△6,416	92.8%
河東郡 〃	50,581	65,130	△14,549	77.6%
金海郡 〃	12,276	5,368	6,908	228.6%
梁山郡 〃	34,183	28,186	5,997	121.2%
巨濟郡 〃	38,370	38,219	151	100.3%
蔚山市 〃	88,326	26,960	61,366	327.6%
統營郡 〃	7,276	28,763	△21,487	25.2%
蔚州郡 〃	9,152	6,586	2,566	138.9%
釜山市 〃	98,874	91,362	7,512	7108.2%
計	776,931	678,621	98,316	114.4%
平 均	51,795	45,241	6,554	114.4%

※ △表示金額은 固定資産投資限殘未達金額이며 固定資産基準 ≤ 自己資産이다.

22) 漁協會計 및 事業規約 第31條 同 6條.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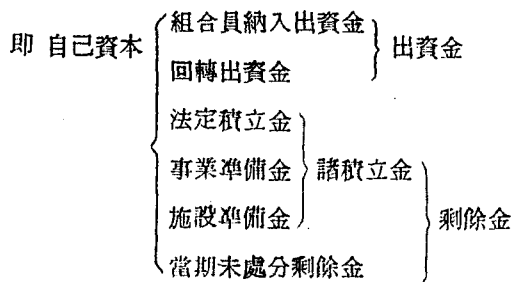
77,183천원이 될 것이며 平均 自己自己資本은 45,241천원이므로 固定性資金의 若 30%가 返濟義務와 利子負擔의 壓迫을 받는 他人資本으로 充當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漁協事業이 流通機能的 性格임을 勘索하면 確實히 慶南漁協들의 固定比率은 높은 편이며 15個漁協中 10個組合이 한결같이 財務基準이나 關係規約을 無視한 固定資産의 過當確保(over investment of plant)에 熱中하고 있다는 事實은 注目할 일이다.

이는 앞에서도 말 했다싶이 信用 經濟등 收益性事業에로의 資金運用을 制限하고 固有의 事業活動을 沮止시킴으로써 漁協營營의 cost push를 誘發하여 相對的 收益率低下를 超來하게 된다.

나. 自己資金確保基準

漁協의 自己資本은 組合員의 出資金과 法定積立金 事業準備金施設準備金등의 各種積立金과 當期末處分剩餘金으로 構成되고 그 確保基準은 組合所有의 固定資産價額과 組合員의 納入出資金의 合計額 以上이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²³⁾



自己資本確保基準 ≧ 固定資産價額 + 組合員納入出資金

그러나 一般의 企業의 財務構成에서 自己資本의 標準比率은 100以上이며 높을 수록 經營의 安定性이 維持됨으로 위의 自己資本基準은 그 最小限의 確保額을 일컫는 것으로 財務基準이나 漁協關係規約의 意味는 적어도 固定資産에 投資할 資本以上の 自己資本을 確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一種의 強制規定인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返濟義務와 利子負擔을 느끼는 他人資本이 固定資産에 投入된다면 資本回轉率의 緩慢과 低收益性으로 因하여 財政과 收支壓迫을 免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自己資本의 最底確保基準을 明文規定으로 定해 놓은 意義가 있는 것이며 이 基準에 依한 慶南地方漁協의 自己資本確保基準金額은 平均 53,269천원 이상 이어야 할 것이나 實際 自己資本額은 平均 45,241천원이므로 15.1%인 漁協當 平均 8,028천원이 不足되는 셈이다. 그리고 固城業協을 비롯한 15個漁協이 다같이 이 基準에 未達되고 釜山市漁協을 비롯한 大規模漁協들도 역시 最少限의 自己資本을 確保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23) 漁協會計 및 事業規約 第6條參照.

漁協別 自己資本 基準對比 (1972)

〈表 22〉

(單位：1000원)

漁協別	區分	自己資本基準			實際自己資本額 (B)	基準未達 또는 超過(A/B)	
		固定資産	出資額	計 (A)		金額	比率%
固城郡	漁協	33,416	728	34,144	4,517	△29,627	△15.8
南海郡	〃	83,516	2,653	86,169	146,192	60,023	169.6
昌原郡	〃	36,371	631	37,002	23,428	△13,574	△63.3
馬山市	〃	98,222	712	98,934	62,667	△36,267	△63.3
三浦市	〃	93,191	1,873	95,064	50,034	△45,030	△52.6
鎮海市	〃	9,579	455	10,014	11,535	521	151.1
忠武市	〃	83,258	2,009	85,267	89,674	4,407	105.1
河東郡	〃	50,581	1,156	51,737	65,130	13,393	125.8
金海郡	〃	12,276	625	12,901	5,368	△7,533	△41.6
梁山郡	〃	34,183	2,540	36,723	28,186	△8,537	△76.7
巨濟郡	〃	38,370	2,840	41,210	38,219	△12,991	△92.7
蔚山市	〃	88,326	1,962	90,288	26,960	△63,318	△29.8
統營郡	〃	3,276	2,010	9,286	28,763	19,477	309.7
蔚州郡	〃	9,152	1,415	10,567	6,586	3,981	62.3
釜山市	〃	98,874	868	99,742	91,362	△8,380	△91.5
計		776,931	22,457	799,048	678,621	△120,427	△84.9
平均		51,795	1,497	53,269	45,241	△8,028	△84.9

註 △表示는 自己資本 基準未達漁協의 未達金額임.

그러나 1963年의 平均自己資本規模 2,924천원에서 1972년에는 45,241에 達함으로 年平均43.4%식의 自己資本增加를 가져왔으며 10年間 15.5배나 늘어났을 뿐 아니라 1966年以後 부터는 이와 같은 自己資本의 相對的 增加로 他人資本依存度를 크게 減少시킴은 實績은 같은 協同組合으로서 農協과 比較할 때 漁協의 經營成果를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自己資本中 剩餘金(諸積立金과 當期末處分利益剩餘金)의 成長實績은 1963年比 1972年에 農協은 6.8배인데 反해 漁協은 18.7배에 이르고 있어 놀라운 뿐 아니라 自己資本의 構成狀態도 農協은 出資金 34.5% 剩餘金 65.5%인데 對해 漁協은 出資金 3.3% 剩餘金 96.7%로 對照的이다.

이와같은 漁協自己資本構成에서 짐작할 수 있는것은 農民과 漁民의 自己組合에 對한 參與度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農民에 比해 漁協의 組合運營에 對한 發言權이 弱화될것이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Ⅰ)

慶南漁協資本依存度

<表 23>

(單位: 1000원)

年度別	區分	總計		漁協當平均		依存狀況	
		總資本	自己資本	自己資本	總資本	他人資本 依存度	自己資本 充當率
1963		422,460	43,962	28,164	2,924	91.7%	8.3%
1966		558,826	150,555	37,255	10,037	73.1%	26.9%
1967		1,158,569	241,673	77,255	16,110	79.2%	20.8%
1970		3,338,172	592,462	222,545	39,467	82.3%	17.7%
1972		4,283,162	678,621	281,761	45,241	84.2%	15.8%

資料: 水協中央會, 全員組合實態調查報告書.

慶南漁協自己資本年度別形成現況

<表 24>

(單位: 1,000원)

年度別	區分	總規模	漁協當平均	對前年成長率
1963		49,091	2,924	0
1964		77,292	5,153	76.2%
1965		106,048	7,069	39%
1966		150,555	10,037	42%
1967		241,673	16,110	70.4%
1969		426,195	28,413	76.3%
1970		592,462	39,497	38%
1972		678,621	45,241	14%

資料: 慶南의 年度別 漁協對借對照表에서 作成.

憂慮된다.

以上과 같이 漁協經營資產과 그 財政狀態를 主로 慶南漁協을 中心으로 農協과 日本의 大規模組合 資料와 相互比較하면서 分析해 보았거니와 漁協의 財務管理가 一般企業과 마찬가지로 重要하다고 한다면 여하한 경우라 할지라도 漁協의 小規模資本을 効果적으로 活用키 爲해서는 自己資本과 他人資本과의 關係, 長期資本과 短期資本과의 關係 資本의 需要와 그 充足, 資本의 調達과 그 運用關係가 면밀히 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長短期運營 計劃을 通하여 必要資本의 見積, 資本의 調達方法, 財務構造의 有機化등을 包括적으로 다루워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漁協의 關係規程 및 規約에도 明示되어 있을 뿐 아니라 特히 C. G. Baier 教授가 強調하고 있는 適正資本維持의 原則, 適正固定資產維持의 原則, 自己資本의 收益

水産經營論叢

優性先의 原則 등 基本財務原則이 徹底히 遵守되어 財政狀態의 惡化를 未然에 막아야 할 것이며²⁴⁾ 이를 爲해서는 事前統制過程의 強化가 必要함으로 地區別漁協의 事業計劃과 收支豫算의 承認機關인 水協支部單位의 實務級業務能力을 먼저 補強시킬 것이 또한 先決要件이기도 하다.

24) 徐其源著：農協經營 農協中央會刊 1971 pp. 352~354.

漁業協同組合의 運營實態에 關한 研究(I)

漁協別 自己 資本의 規模

(단위 : 1,000원)

<表 25>

區分 漁協別	1963			1972			成長率		
	出資金	剩餘金	計	出資金	剩餘金	計	出資金	剩餘金	計
固城郡 漁協	382	2,735	3,117	728	3,789	4,517	1.9倍	1.4倍	1.4倍
南海郡 〃	567	34	601	2,653	143,539	146,192	4.7%	4,2217%	2432.2%
昌原郡 〃	165	679	844	631	22,797	23,428	3.8%	33.5%	27.7%
馬山市 〃	133	7,109	7,242	712	61,955	62,667	5.3%	8.7%	8.6%
三千浦市 〃	215	3,179	3,394	1,873	87,801	89,674	8.7%	27.6%	26.4%
鎮海市 〃	264	2,219	2,483	435	11,100	11,535	1.6%	5.0%	4.6%
忠武市 〃	820	2,676	3,496	2,009	48,025	50,034	2.4%	17.9%	14.3%
河東郡 〃	389	-	389	1,156	63,974	65,130	2.9%	-	167.4%
金海郡 〃	179	-	179	625	4,743	5,368	3.4%	-	29.9%
梁山郡 〃	1,539	873	2,541	2,540	25,646	28,186	1.6%	29.4%	11.8%
巨濟郡 〃	1,162	2,441	3,603	2,840	35,379	38,219	3.1%	14.5%	10.6%
蔚山市 〃	719	71	780	1,962	24,998	26,960	2.7%	352.1%	34.1%
統營郡 〃	882	226	1,108	2,010	26,753	28,763	2.3%	118.4%	25.9%
蔚州郡 〃	835	225	1,060	1,415	5,171	6,586	1.7%	22.9%	6.2%
釜山市 〃	581	15,632	16,213	868	90,494	91,362	1.5%	5.8%	5.6%
計	8,832	35,030	43,862	22,457	656,164	678,621	2.5%	18.7%	5.5%
全國 計						2,207,323			
平均 (慶南 全國)	589	2,335	2,924	1,497	43,744	45,241	2.5%	18.7%	15.5%
農協	4,164	4,343	8,507	14,079	29,585	43,664	3.4%	6.8%	5.1%

資料 : ① 慶南의 漁協年度別 貸借對照表에서 作成

② 農協은 農業年鑑 1973에서 作成

漁協과 農協의 平均 自己資本 構造

(單位 : 1,000원)

<表 26>

組合別	1963			1972			成長 (72/63)		
	出資金	剩餘金	計	出資金	剩餘金	計	出資金	剩餘金	計
漁協 平均 (慶南)	589	2,335	2,924	1,497	43,744	45,241	2.5倍	18.7倍	15.5倍
構成	20.2	79.8	100.0%	3.3	96.7	100.0%			
農協 平均 (全國市郡)	4,164	4,343	8,507	14,079	29,585	43,664	3.4%	6.8%	5.1%
構成	48.9	51.1	100.0%	34.5	65.5	100.0%			